기 안 용 지

훈령 제368호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 110- 1322	(전화번호)	전결규정 조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1부시장	기획관리관
	내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인사과장	법무과장
	조직관리계장	도시행정계장
기안책임자	문무봉	73.

발송 1973. 6. 30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법무실 1973. 6. 제 12 호 심사
제목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 개정		

접열 1973. 5. 30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위와 같음

별첨과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 발안에 의하여 시행코저 합니다.

첨부 1. 개정사유 1부

2. 공포안 1부. 끝.

정서 발송

(제 2안)

수신 수신처참조 발신: 시장

제목 훈령공포통지.

다음과 같이 훈령이 공포되었기 통지함

공포년월일	훈령 번호	건 명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

첨부: 공포안 1부 끝.

수신처:

(제3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시장

제목 시보게재 의뢰

별첨과 같이 훈령이 공포되었기 통지하니 시보에 게재할것

첨부: 공포안 1부 끝

(공 포 안)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1973. 5월 일

서울특별시 훈령제 호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행정과 정리계 업무중 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에 의한 행위허가의 결재권자를 "국장, 에서 "시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사유

1. 구획정리사업법 제 31조에 의한 행위허가는 도시조경 및 녹지조성 사업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녹지사업 및 도시계획업무를 총괄조정 할수있도록 최종 결재권자 까지 결심을 받아야 함.

신구대비표

도시행정과

계별	관장업무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관리계	"기재생략"								
정리계	1. 인허가	1. 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에 의한 행위허가 "이하 기재생략"				X		O	

서울特別市委任專決規程檢討(造景業務關聯)

項目	主管部署	現行	改正(案)	檢討事項	人事課意見	主管課意見
1. 區劃整理事業法 39에 依한 行爲許可	都市行政課	局長專決 (委任專決規定 85페이지 整理係 1項)	市長	○ 綠地保護業務는 產業局長 所管事項이며 行爲許可는 都市計劃局長 所管으로 造景과 關聯된 業務處理가 各各 局을 달리하는 局長의 專決事項에 屬하고 있음 ○ 產業局과 都市計劃局을 調整統制할 必要性 있으므로 第1副市長 所管事項과 第2副市長 所管事項을 調整統制키 위하여 現行 局長專決事項을 市長專決로 改正 必要性 있음	區劃整理事業法 39條에 依한 行爲許可는 都市의 美觀 및 綠地保護等 造景業務와 直結되는 重要行政處理이나 各各 所管別로 局長專決事項으로 處理되고 있어 이를 調整 統制하기 爲하여 市長專決로 改正함이 妥當	民願書類簡素化方案에 依據 本許可는 設計書 自体를 市에서 作成하는 関係上 本來 6日間의 處理期間을 15日까지 延長 處理하고 있는 實情에 있으며 未來地區 繼續 許可하게되는 경우 專決規程을 現行대로 함이 妥當 500坪以上만 하는 것이 可함.
2. 林野의 開墾許可	綠地課 (承認) 區庁長許可	市長 (委任專決規程 154페이지 林政係 1項)	本庁全担 坪數에 따라 專決权規制	○ 法(林產物団束에 関한 法律施行令)上 林野開墾許可는 區庁長에게 山林庁長으로부터 權限委任된 事項임 (法施行令 第9條 1項) ○ 서울市의 現行制度 開墾許可는 區庁長이 專担하되 서울特別市 例規第227号에 依據 林野開墾許可時에는 事前에 市長의 承認을 得하도록 規制되어 있으므로 事實上 市長專決权限에 屬함 (同 例規 4項)	○ 現行專決权限이 市長으로 되어 있으며 山林保護의 時代的 要請에 따라 現行制度가 妥當 ○ 本庁許可는 法違背事項임	人事課意見과 同一함